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관지 천식이 악화됨으로써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서울행법 2001구7199

[판결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과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유발되고,그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위 기관지 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이 유]

1이사건처분의경위

기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조○○(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세라믹(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28 14:40경 선행사인 기관지 천식, 직접사 인급성 천식 발작(추정)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13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이하 '종 전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종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피고는 같은 해 11. 19일 위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위 종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후 원고는 다시 2001. 1. 15 종전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이중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한다)을 하였다.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망인의경력,업무내용및근무환경

망인이 1993.10.1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까지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같은 달 28일까지 다른 자재과

직원들과 함께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지하 자재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직접 운반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지하자재창고는 평소 적 치된자재로 인하여 먼지가 많았으며, 환풍기가 5대설 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 다.

한편소외회사는 1997.1월경부도가나게되어자 재과 직원을 감축하였는데,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 량은약2배정도증가하였다.

나.망인의사망경위및원인

1) 망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1995.9 23일부터 11.9 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 이에는 기관지염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 을 하였고, 그후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 았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일인 1998.5 28일 오전 위 지하자재창고에서 자재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13:20경 소외 회사의 1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여, 동료 직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의식불명인 상태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기도 삽관,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40경 기관지 천식의 악화로 인한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하였다.

3 기관지 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기관지가 수축함으로써 발작적인 호흡곤란,기침,가래,천명 및 가슴답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써,위 증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급성 악화와 무 증상의 기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심 한 발작이 수일 내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 으며, 드물게는 급성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다.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 에 근무하는 동안 먼지가 많은 지하 자재창고에서의 업무담당과부도후에는망인의업무량이약2배정도 증가한점,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기관지 천식으로계속 치료를 받아온점 사망직전 약 10일 동안 소외 회사의 자재 창고 이전을 위하여 통상 적인 업무 외에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위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관지 천식의 급성악 화(발작)로사망한 점 기관지 천식은 과로 ·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기관 지 천식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제 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 스트레스 및 먼지 등 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유발된 후에다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를 수행하였으며,이로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임에도,피고가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 기로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1.1.2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